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194
----------	-------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431호)	이만희의원	2024.8.30.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2024.11.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5.9.25.) 상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8294호)	윤준병의원	2025.2.20.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5.4.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5.9.25.) 상정

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9.25.)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9.30.)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
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
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 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확산되면서 농기자재 수출
증가 등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규모와 부가가치가 증가하여 농업
연관 산업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 분야의 식량 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
가의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므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투자·국제
협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 범위를
확대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농지보전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될 농지의 ‘적절한 규모’가 ‘농산물의 안
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의3 신

설, 안 제7조, 제32조제1항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99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농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산물 가공·유통업,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중 “식품산업”을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수입 및 비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식품산업”을 각각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을 “농업경영비 절감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정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적절한”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의 제목 “(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을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를 “음식물 조

리법, 농산물 유래 식품 및 기타 상품의 제조·가공 기술, 농업투입재 제조기술 등 농산업 관련 연구”로, “농업 및 식품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로,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식품산업 분야”를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기술의 교류, 국제기구 활동 참여”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농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농산물·식품 등 농산업 제품·기술·서비스 수출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산물 및 식품”을 “농산물·식품 등 농산업 제품·기술·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을 “농산물·식품 등 농산업 제품·기술·서비스를 생산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99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의2. (생략) <u><신설></u> 9. (생략)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농촌 및 <u>식품산업</u>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생략) <u><신설></u>	법률 제2099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정의) ----- -----. 1. ~ 8의2. (현행과 같음) <u>8의3. “농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산물 가공·유통업,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u> 9.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u>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u>----- -----.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u>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생략)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한다. 이하 제4호
에서 같다)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생략)

6.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생
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여
기에 수입 및 비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2. (현행과 같음)

3.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4.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5. (현행과 같음)

6. 농업경영비 절감 등 농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
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⑦ (생략)

제1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 정
부는 매년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제14
조제2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보
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는 매년 그 지역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 --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

②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현황 및 정
책동향-----

③ -----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과 그 밖의 농산업 정책-----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2조(농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 등을 위하여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

제32조(농지의 보전) ① -----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 <삭 제>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農業投入材)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 · 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 · 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 · 개발 · 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 ②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제35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음식물 조리법, 농산물 유통
식품 및 기타 상품의 제조·가
공 기술, 농업투입재 제조기술
등 농산업 관련 연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
의 농산업-----

② (생 략)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추진)

①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

②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제5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 ① -----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기술의 교류, 국제기구 활동 참여-----

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8조(농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연구와 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

-----.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농업 및 식품산 업과 그 밖의 농산업-----

-----.

제59조(농산물·식품 등 농산업 제품·기술·서비스 수출 진흥) ① -----
-농산물·식품 등 농산업 제품
·기술·서비스-----

-----.

② -----

-----농산물·식품
등 농산업 제품·기술·서비스
를 생산 또는-----

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